

증평군 지방지도관 직위 지정 규정 [2003. 12. 26 훈령 제12호]

개정 2007. 12. 21 훈령 제40호

제1조(직위지정)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[별표 2의2]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도관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 <개정 2007. 12. 21>

구 분		직 위 명 (지정직위)	지도관 직위의 종류 (별표 2의2)	비고
호	목			
1 (기관의 장 인 지도관 의 직위)	가			
	나	농업기술센터소장	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·책임 성의 정도가 상당한 지도기관 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	
	다			
2 (부서의 장 인 지도관 의 직위)	가			
	나	농업기술센터과장	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·조정 하는 직무를 행하는 행위	
	다			
3 (1·2호에 해 당 하 지 아 니 하 는 지도관)	가			
	나			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12. 21 훈령 제40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